

6. 土地去來契約許可區域指定

建設交通部 公告 第1995-105號 1995. 4. 25

1. 대상지역

대상지역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지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에 의해 지정한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함.

시·도	대 상 지 역
부산광역시	강서구 성북동·동선동·눌차동·천성동·대항동
인천광역시	중구 운남동·중산동·운서동·운북동·무의동·덕교동·을왕동·남북동 북구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(기 허가구역 제외)
대전광역시	동구 추동·비룡동·주산동·용계동·마산동·호평동·직동·세천동·신상동· 신하동·신촌동·사성동·내탑동·오동·주촌동 중 도시계획법상 녹지 지역 서구 흑석동·매노동·산직동·장안동·평촌동·우명동·원정동·용촌동·봉곡 동·괴곡동 중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 유성구 성북동·세동·송정동·방동·추목동·자운동·신봉동·수남동·안산동 ·외삼동·반석동 중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 대덕구 법동·중리동(기 허가구역 제외)
경기도	의정부시 장암동·금오동·민락동 동두천시 지행동·생연동·동두천동 고양시 성사동·주교동·식사동·원신동·중동·일산동·풍산동·장항동·천정 동·백마동·낙민동·송포동·송산동·홍도동 남양주시 호평동·평내동·화도읍

시·도	대 상 지 역
경 기 도	<p>양주군 회천읍, 주내면, 남면, 백석면</p> <p>파주군 금촌읍, 문산읍</p> <p>연천군 연천읍, 신서면</p> <p>포천군 포천읍, 군내면, 소흘면, 영중면, 영북면</p>
강 원 도	<p>춘천시 신동면</p> <p>동해시 전지역(목호진, 발한동 제외)</p> <p>속초시 전지역</p> <p>삼척시 동지역 전역</p> <p>원덕읍, 근덕면</p> <p>홍천군 남면</p> <p>철원군 철원읍, 동송읍</p> <p>갈말읍 동막·정연·상사·내대·토성·지경리</p> <p>김화읍 도창·읍내·생창·운장·암정·용양·학사·청양리</p> <p>근북면 유곡리</p> <p>근남면 마현·풍암·양지·사곡리</p> <p>서면 외수리</p>
충 청 북 도	<p>청주시 용암동·가경동</p> <p>충주시 금릉동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</p> <p>칠금동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</p>
충 청 남 도	<p>공주시 신관동(녹지지역 제외), 쌍신동(녹지지역 제외)</p> <p>월미동(녹지지역 제외), 금홍동(녹지지역 제외)</p> <p>공주시 무룡동(녹지지역 제외), 월송동(녹지지역 제외)</p> <p>금산군 제원면</p> <p>논산면 논산읍</p> <p>예산군 덕산면 사동리·신평리·시량리</p>
전 라 남 도	<p>여수시 경호동(기 허가구역 제외)</p> <p>광양시 태인동(기 허가구역 제외)</p> <p>영광군 법성면</p>

시·도	대 상 지 역
경 상 북 도	포항시 구룡포읍(기 허가구역 제외) 동해면(기 허가구역 제외), 장기면 안동시 도산면 상주시 성동동(기 허가구역 제외)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·대천리 칠곡군 약목면, 기산면
경 상 남 도	창원시 북면 울산시 중구 화봉동·연암동 울주군 삼남면, 농소면, 범서면 진주시 가좌동·호탄동·관문동(기 허가구역 제외) 거제시 장목면, 자연공원법산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,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(거제면 및 기 허가구역 제외) 밀양시 부북면 함안군 칠원면 양산군 물금면, 상북면 하동군 금성면, 금남면 산청군 삼장면 거창군 가조면

2. 지정기간 : 1995년 4월 28일~1997년 9월 6일

3. 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

지 역		면 적
도시계획구역 안	주거지역	270m ² 초과
	상업지역	330m ² 초과
	공업지역	990m ² 초과
	녹지지역	330m ² 초과
	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	270m ² 초과
도시계획구역 밖	농 지	1,000m ² 초과
	임 야	2,000m ² 초과
	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	500m ² 초과

※ 위 면적이하의 토지거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